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2022. 3. 16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6일

-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-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및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 - 협의체 구성 :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
 - 협의체 운영 :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
 - 위원회에 위원이 성별·경력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
-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(안 제15조)
 -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
-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8일 개정된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, 자문기구 설치근거,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첫째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구성협의체를 두고, 그 운영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하도록 하였으며,

둘째,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셋째,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본 개정안은 「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의3에 따른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기구의 설치 근거,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영 제4조의3제1
항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
한다)를 둔다.

- ②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
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.
- 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
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
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.
-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
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.
-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-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·경력
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⑦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
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
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자문기구 설치 등)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·제도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제안,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제17조(종전의 제16조)의 제목 “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)” 을 “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다만, 제1항” 을 “제1항과 제2항” 으로 한다.

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.</u></p> <p><u>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</u></p> <p><u>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·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29 1099 411 1137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55 282 1350 320"><u>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8 349 1410 797">⑦ <u>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 <p data-bbox="818 826 1410 1072">⑧ <u>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8 1102 1410 1415"><u>제15조(자문기구의 설치 등)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18 1444 1410 1691">② <u>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·제도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8 1720 1410 1966"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제안,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 (생 략)</p> <p>제16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(신 설)</p> <p>② 다만,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「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과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</p> <p>제17조 (생략)</p>	<p>제16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 <p>제17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「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과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</p> <p>제18조 (현행 17조와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7. 1] [법률 제17990호, 2021. 3. 30, 일부개정]

제26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제35조(예산)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가 수립한다. 이 경우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□ 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의3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)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구성협의체, 자문기구 참여 실비 지급
-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 사업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위원회구성협의체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
-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자문기구 참석수당 지급
-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4조의2제7항, 제15조, 제17조제2항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위원구성협의회 5명 × 년 2회 × 100천원(참석수당) × 2년(3년임기 위원선발)
- 자문기구 10명 × 년 4회 × 100천원(참석수당) × 5년
- 충청북도 일반직과 경찰관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 차액 지원
(도 일반직 90만원 -경찰관 40만원)

구 분	합 계	산출기초	비고
후생복지비 지원 (복지포인트)	10,500천원	- 공무원이 아닌 직원(공무직) 21명×500천원	

나. 추계 결과('23년부터 향후 5년간) : 74,500천원

- 위원구성협의회 참석수당 : 2,000천원

